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

◇ 제정 이유

- 현행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기준을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4조 및 행정안전부 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”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,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「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기준」을 환경부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내진등급은 기존과 같이 II등급을 유지하되, I등급 적용대상을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매립시설로 구체화함
- 나.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, 즉시복구, 장기복구/인명보호, 붕괴방지 4가지 중 “붕괴방지구준”을 우선 고려하여 적용함
- 다. 내진설계 적용대상 시설을 다음과 같이 확대함
 - 기존 폐기물성토제체 및 사면, 폐기물저류시설, 기초지반 및 차수시설, 매설관로 이외 침출수 처리시설, 매립가스 저장시설, 관리사무소 등 추가